

##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 1단지

(단위 : 세대)

구 분(약식표기)			59B	59C	59D	72A	72B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경기도	-	-	-	1	-	1
		서울특별시	-	-	-	-	-	-
		인천광역시	-	-	-	-	-	-
	국가유공자등		-	1	-	-	-	1
	장기복무 제대 군인		1	-	-	-	-	1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	-	-	-	-
	중소기업 근로자		-	1	-	-	-	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50%)		1	1	-	1	-	3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50%)		-	1	-	-	-	1
신혼부부 특별공급	-	1	3	1	2	1	8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1	-	-	-	1	
생애최초 특별공급	-	1	2	-	1	-	4	
합 계			4	10	1	5	1	21

##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 2단지

(단위 : 세대)

구 분(약식표기)			59A	59C	59E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경기도	-	1	-	1
		서울특별시	-	-	-	-
		인천광역시	-	-	-	-
	국가유공자등		1	-	-	1
	장기복무 제대 군인		-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	1	1
	중소기업 근로자		1	-	-	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50%)		1	1	1	3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50%)		1	-	-	1
신혼부부 특별공급	-	3	3	2	8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1	-	1	
생애최초 특별공급	-	1	2	1	4	
합 계			8	8	5	21

##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청약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li> <li>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소형-저가주택은 동법 제28조에 따른 일반공급에만 해당하므로, 기관추천 특별공급에는 무주택으로 판단하지않음)</li> <li>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li> <li>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li> </ul>
당첨자 선정	<p>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p> <p>「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p> <p>-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p> <p>-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p>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 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li> </ul>

## ■ 추천기관

추천기관	청약통장 구비서류
장애인(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국가유공자 등(경기동부보훈지청)	청약통장 필요 없음
장기복무 제대 군인(경기동부보훈지청), 10년 이상 복무 중인 군인(국군복지단), 중소기업 근로자(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 요건을 갖춘 분

## ■ 당첨유형별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발급기준	해당서류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기관추천	○		당첨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당첨자	주민등록표 등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당첨자	주민등록표 초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당첨자	가족관계증명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당첨자	출입국사실증명원	"출생일~2021년 현재" 내역 / 인터넷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특별공급 기관추천 당첨자는 제외
	○		당첨자 및 직계비속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여부 확인 및 무주택 확인 등 (상세로 발급) ※직계비속의 경우 만18세 이상자에 한함
	○		당첨자 및 세대원	무주택 소명자료	무주택 및 무주택간주(소형저가주택, 농어가주택 등)를 증명하는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주택공시가격증명원, 무허가건물확인서등
	○		[분리세대]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분리세대]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에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을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재혼]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전혼 자녀가 당첨자의 주민등록표상에서 당첨자와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상세"로 발급)
	○		당첨자	해외근무 증빙서류	증빙관련 서류 (파견 및 출장 명령서, 사업 또는 근로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당첨자	복무확인서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포함)
대리인신청서	○		당첨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당첨자 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함(직계존·비속 포함)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상세표기" 및 "전체공개"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전입사항/주소변동 내역/세대원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등)

※ 제출서류는 당첨자격 검사 과정에서 아래 명시된 서류 외에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